

2024년 항공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항공기상청의 202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6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 내용

고용형태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기간제 근로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항공기상국제업무 관련 자료조사 및 번역항공기상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관련 영상촬영편집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2. 근무 조건

-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24. 9. 2.(잠정)~2024. 12. 31.까지
 -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월 2,060,740원(세금 공제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 휴게시간: 12:00~13:00(식사 시간 포함)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 겸직 금지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연령)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연장/ 1년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이상: 3세 연장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근무부서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 (분야별, 자격별 차등우대)

분야	자격증명
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 정보기기운영, 정보처리

- * 사무분야와 정보기술분야 각각 우대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 * 동일분야 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의 경우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p>[평정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내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4. 7. 16.(화) ~ 2024. 7. 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란 • 항공기상청 홈페이지(amo.kma.go.kr) 「알림·자료」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모집공고란
응시원서 접수	2024. 7. 24.(수) ~ 2024. 7. 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접수(sunah@korea.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8. 8.(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란 • 항공기상청 홈페이지(amo.kma.go.kr) 「알림·자료」란
면접전형	2024. 8. 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항공기상청 대회의실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 시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고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23.(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란 • 항공기상청 홈페이지(amo.kma.go.kr) 「알림·자료」란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근무개시	2024. 9. 2.(월) (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7. 24.(수)~2024. 7. 26.(금) 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
-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접수
 -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청년인턴'으로 하여 송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7.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3~5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p>[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제출기간 및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지역, 부모직업 등 가족관계)에 대하여 일체 기재를 금지하며, 해당 사항이 발견 될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032-740-2803, 032-222-3002)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시원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채용분야	청년인턴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우대요건				
※ 해당하는 경우, ✓ 표기 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접수결과 회신에 등 필요)
- ⑤ 우대요건 :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우대요건은 표에 내용 작성

<별지 제2호>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미기재	성명		채용 분야	청년인턴
------	-----	----	--	----------	------

◎ 자기소개서

- 작성 분량: 1,000자~2,000자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적·학위·자격·경력)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4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항공기상청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기상업무 분야 등 사무업무 지원				

응시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2024. 9. 2. 예정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청년인턴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붙임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는 시험 종료 후 필요 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